

양양국제공항 무사증입국 단체관광객 준법도우미 운영단체 모집 수정 공고

법무부는 「양양국제공항 무사증입국 단체관광객 준법도우미」 운영
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2년 5월 9일

법무부장관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아시아 4국 단체관광객 양양공항 무사증입국 단체관광객 제도를 원활히 지원하여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
- 단체관광객의 출입국 수속을 지원하고 이탈자 발생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제도 **운영에 기여**

□ 주요 사업내용

- **운영단체의 업무** : 양양공항 무사증입국 단체관광객의 출입국 수속 지원 등을 위한 무사증입국 단체관광객 준법도우미(이하 “준법도우미”라 함) 운영
- **준법도우미 임무** : ① 무사증입국 단체관광객의 출입국수속 지원
② 무사증입국 단체관광객이 여행경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안내
③ 무사증입국 단체관광객 이탈 방지

< 준법도우미 동선 >

☞ 양양공항 입국장 게이트에서 관광객 마중 → 입국심사 안내 → 관광지역 동행
후 출국 배웅

- **준법도우미 자격 요건** : ①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
② 품행이 단정할 것 ③ 단체관광외국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
정도의 어학 능력 (영어·베트남어·인도네시아어·몽골어 등)
④ 무술 유단자 ⑤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업무나 여행업종에
종사한 경험

※ 위 요건 중 제1항, 제2항은 필수 요건으로 제3항, 제4항, 제5항은 우대
요건으로 하여 준법도우미 채용 원칙

- **준법도우미 활동대상** : 양양공항으로 도착하는 아시아 4개국
국민으로서 15일 이내의 활동지역 내 관광 등을 위해 체류하려는
5인 이상 단체관광객

- **준법도우미 적정 운영 인력** : 단체관광객 13명 당 1명 배치 원칙

※ 인력운영방식은 「양양공항 무사증입국 단체관광객 준법도우미 관리
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함)」의 승인을 받음

- **단체지정기간** : 2022. 6. 1. ~ 2023. 5. 31.

- **운영재원** : 수수료는 단체관광외국인이 부담하는 관광상품에
포함시켜 마련함을 원칙으로 하며, 그 상품 운영자가 운영단체에게
수수료를 정산

※ 지정기간동안 획득한 운영재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운영방식에 따라
준법도우미를 운영하여야 하며 손해는 보전하지 않음

※ 수수료는 단체관광외국인 예상 규모, 준법도우미 운영인원 및 소요
비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적정 비용을 산정함

2. 지원 자격

☐ 자격 요건

- 민법에 의한 비영리단체

※ 설립일이 공모 공고일 현재 1년 이상

- 공익사업 관련 실적이 있을 것

- 임원 중 최근 3년 이내 범칙금 100만 원 이상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것

☐ 선정 시 우대사항

-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업무 및 관광사업 관련 공익실적 우수 단체
- 중앙행정기관 추천 단체

3. 심사 및 선정방법

☐ 법무부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사·최종선정

※ 위원회 구성 : 위원장(출입국정책단장) 및 6인 위원(법무부, 문체부, 국토부, 강원도청,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,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 직원 위촉)

※ 필요시 지정 신청 단체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 설명

☐ 운영단체 선정 방법 : 자격 요건 충족 여부, 선정 우대사항,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 심사하여 우수업체 선정

4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☐ 접수기간 : 2022. 5. 16. ~ 5. 23. 평일 09:00~17:00

☐ 제출서류

- ① 무사증입국 준법도우미 운영단체 지정 신청서 1부 (서식 1호)
- ② 무사증입국 준법도우미 운영계획서 1부 (일반현황, 견적서 등 포함)
- ③ ‘우대사항’ 입증 서류 (해당 단체에 한해 제출)
-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
- ⑤ 법인설립허가증 1부

☐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)

☐ 접수장소 : 법무부 출입국심사과(02-2110-4073)

※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, 정부과천청사(중앙동)

☐ 최종발표 : 2022. 5. 27.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
홈페이지 게시 예정